

규정류 (제정 • 개정) 입안서

1. 규정류명 : RISE사업단운영규정
2. 규정류 (제정•개정) 사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사용 중인 'RISE' 명칭을 '앵커'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안대학교 규정집 내 'RISE' 명칭을 '앵커'로 변경.
- 3-1-23. RISE사업단운영규정 제1조 ~ 제9조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공포일로부터 시행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 나. 예산조치:
 - 다. 관련부서:
 - 라. 신구조문대비표

2026년 7월 23일

소관부서 : RISE사업단 주 윤 황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 RISE사업단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3-1-23 RISE사업단 운영규정 RISE사업단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안대학교 RISE사업단 (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업단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른 경기도 RISE 특화산업과 연계한 본교 의 특화분야 육성을 포함하여, 사업의 총괄기획, 운영, 관리 및 성과 확산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컨소시엄 구성) RIS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내 시· 군, 대학 및 전문대학, 기업체 및 연구소 등과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기도 RISE 사업 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화분야 육성 제5조(조직 및 사업총괄부서)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관으로 사업총괄부서는 ‘RISE사업팀’으로 하며, 사업의 총 괄 운영 및 세부사업 관리 조직을 지원한다.	3-1-23 앵커사업단 운영규정 앵커사업단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안대학교 앵커사업단 (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0.00.) 제2조(기능) 사업단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따른 경기도 앵커 특화산업과 연계한 본교 의 특화분야 육성을 포함하여, 사업의 총괄기획, 운영, 관리 및 성과 확산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26.00.00.) 제3조(컨소시엄 구성) 앵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내 시· 군, 대학 및 전문대학, 기업체 및 연구소 등과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2026.00.00.)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기도 앵커 사업 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화분야 육성(개정 2026.00.00.) 제5조(조직 및 사업총괄부서)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관으로 사업총괄부서는 ‘앵커사업팀’으로 하며, 사업의 총 괄 운영 및 세부사업 관리 조직을 지원한다. (개정 2026.00.0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사용 중인 ‘RISE’ 명칭을 ‘앵커’로 변경하고자 함.

제6조(구성 및 역할)

④ 자문위원은 RISE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위촉한다.

제7조(RISE사업운영위원회)①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예산 집행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RISE사업운영위 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및 교무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 사업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RISE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변경
- 2. RISE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 3. RISE사업 세부 예·결산
- 4. RISE사업 세부사업별 운영 점검 및 업무 조정
- 5. RISE사업 추진결과 및 운영방안
- 6. 그 밖의 사업 관련 세부 사항 심의

제8조(사업단 운영재원 및 집행)

① 사업단 운영재원은 경기도에서 교부한 RISE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펀 드, 장안대학교의 대응 사업비로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부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RISE 사업 예산 집행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구성 및 역할)

④ 자문위원은 **앵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위촉한다.(개정 2026.00.00.)

제7조(앵커사업운영위원회)①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예산 집행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앵커사업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00.00.)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및 교무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 사업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앵커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변경(개정2026.00.00.)
- 2. **앵커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개정2026.00.00.)
- 3. **앵커사업** 세부 예·결산(개정 2026.00.00.)
- 4. **앵커사업** 세부사업별 운영 점검 및 업무 조정(개정2026.00.00.)
- 5. **앵커사업** 추진결과 및 운영방안(개정2026.00.00.)
- 6. 그 밖의 사업 관련 세부 사항 심의

제8조(사업단 운영재원 및 집행)

① 사업단 운영재원은 경기도에서 교부한 **앵커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펀 드, 장안대학교의 대응 사업비로 한다.(개정2026.00.00.)

② 사업비 집행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부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앵커 사업 예산 집행지침**”을 따른다.(개정 2026.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 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	--

앵커사업단운영규정

공포 제2026- 0호(제정 2026.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안대학교 앵커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00.00.)

제2조(기능) 사업단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따른 경기도 앵커특화산업과 연계한 본교의 특화분야 육성을 포함하여, 사업의 총괄기획, 운영, 관리 및 성과 확산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6.00.00.)

제3조(컨소시엄 구성) 앵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내 사·군, 대학 및 전문대학, 기업체 및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6.00.00.)

제4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기도 앵커 사업 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화분야 육성(개정2026.00.00.)
2.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및 사업총괄부서)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관으로 사업총괄부서는 ‘앵커사업팀’으로 하며, 사업의 총괄 운영 및 세부사업 관리 조직을 지원한다. (개정 2025.9.25.)(개정2026.00.00.)

제6조(구성 및 역할) ① 본 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며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사업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자문위원은 앵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위촉한다.(개정2026.00.00.)
- 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의 주요사항 심의, 추진사항 점검·평가, 성과관리, 사업관리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둔다.
- ⑥ 사업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과 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앵커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예산 집행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앵커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6.00.00.)

-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및 교무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 사업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앵커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변경(개정2026.00.00.)
 2. 앵커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개정2026.00.00.)
 3. 앵커사업 세부 예·결산(개정2026.00.00.)
 4. 앵커사업 세부사업별 운영 점검 및 업무 조정(개정2026.00.00.)

5. 앵커사업 추진결과 및 운영방안 (개정2026.00.00.)

6. 그 밖의 사업 관련 세부 사항 심의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관리 및 회계

제8조(사업단 운영재원 및 집행) ① 사업단 운영재원은 경기도에서 교부한 앵커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펀드, 장안대학교의 대응 사업비로 한다.(개정2026.00.00.)

② 사업비 집행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부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앵커 사업 예산 집행지침”을 따른다.(개정2026.00.00.)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앵커 사업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을 따른다.(개정2026.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